

교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운영세칙

- 2003. 06. 27. 전면개정
- 2006. 01 .17. 부분개정
- 2012. 05. 01. 부분개정
- 2014. 09. 01. 부분개정
- 2017. 03. 01. 부분개정
- 2017. 05. 01. 부분개정
- 2019. 04. 01. 부분개정
- 2019. 08. 09. 부분개정
- 2025. 12. 01. 전면개정

제1조(목적) 이 운영세칙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에 있다.

제2조(범위) ①이 세칙의 복리후생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조금 및 화환 지원
2. 종합건강검진 지원
3. 교직원 교육훈련비 지원
4. 여가 및 문화지원 : 휴양시설 이용, 교직원 동아리 지원 등
5. 교내시설이용 : 교내 부대시설 이용 등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시행) ①제2조에서 적용되는 복리후생의 시행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②제1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복리후생은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.

③경조금 및 화환 지원은 [별표 1] 에 따른다.

제4조(구성 및 심의)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교직원 복리후생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2. 교직원 복리후생의 신설과 축소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부 칙(2003. 06. 27. 전면통합개정)

①(시행일) 이 개정 통합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통합 전 지침 중 부칙적용) 통합 전 지침 중 부칙에 대하여는 건별로 된 종전의 지침원문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기재를 생략한다.

부 칙(2006. 02. 15. 개정)

①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중전의 '대전보건대학 교직원 복리후생 지원비 지급세칙'은 '교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운영 세칙'으로 규정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경조금 및 화환 지원

구	분	지급액	비고
교직원 본인 결혼	총 장	200,000원	화환 별도
	부총장	100,000원	
교직원 자녀 결혼	총 장	200,000원	화환 별도
	부총장	100,000원	
교직원 본인 사망	총 장	200,000원	조화별도
	부총장	100,000원	
교직원 부모 사망	총 장	200,000원	조화별도
	부총장	100,000원	
교직원 배우자 사망	총 장	200,000원	조화별도
	부총장	100,000원	
교직원 자녀 사망	총 장	200,000원	조화별도
	부총장	100,000원	
교직원 배우자 부모 사망	총 장	200,000원	조화별도
	부총장	100,000원	